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단으로부터 등급이 결정되어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된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가.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가영재가노인복지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가영재가노인복지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계약 당사자(보호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나.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

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1, 2, 3, 4, 5등급 : 재가급여

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한도액)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본인부담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가-8	240분 이상	68,030	14,394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주휴일과 노동절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거 가산할 수 있다.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6. 비급여 대상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①식사재료비 ②이, 미용비 ③기타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등은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계약당사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수급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한 협조의무

라.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수급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

바. 본 기관의 제공 서비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5. 수급자의 입원이나 시설입소로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장기요양급여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수급자와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에 있어 일반 수급자는 월 이용 장기요양급여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경감자로 지정된 수급자는 정해진 경감율에 따라 경감하여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본 센터는 방문요양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한다.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 도움,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급여외행위의 금지)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병원 진료 :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며 발생되는 진료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응급상황시 병원진료 :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비용 부담)

-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 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주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기타

-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